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9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 배준영・윤재갑・金炳旭

최춘식・한기호・이명수

이 용・김선교・서일준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감소가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 촉진 혹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지원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시행해 왔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 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

-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다.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 0조).
- 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안제11조 및 제12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 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지역의 발전 및 낙후도가 심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

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감소지역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 2.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3.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제고, 인구 유입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인구감 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안(이하 "시·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1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도지사는 제7조제7항 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1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 감소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신청) 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관할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 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 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구감소율 및 노령인구비율
 - 2. 지역총생산
 - 3. 재정자립도
 - 4. 지역산업 현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발전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제15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 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수 있다.
- 제18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 소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